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048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: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인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성배, 이숙자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홍국표 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산업창업, 재창업, 청년창업기업,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지원 관련 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창업, 신산업창업,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나.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규정 신설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창업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고, 위원회가 안건 발생 소집하고, 사유 종료시 해산하도록 함(안 제9조)
- 라. 창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명확화(안 제11조)

마. 위원회 간사를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제3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, 제5호,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"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"를 "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,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"7년"을 "7년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경우에는 10년)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"재창업"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신산업창업"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, 파급효과,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(이하 "신산업"이라 한다)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청년창업기업"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.
- 7. "중장년창업기업"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창업기업 등의 책무) ①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(이하 "창업기업 등"이라 한다)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,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, 지식,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,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위원회의 구성 등)"을 "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"을 "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"로, "구성한다"를 "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"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
-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를 따른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 등"을 "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희망한"을 "위촉 해제를 희망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 자"를 "창업기업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	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2. "재창업"이란 중소기업을 폐	
	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	
	하는 것을 말한다.	
2. "기술창업"이란 <u>지식이 집약</u>	3 <u>창의적인</u>	
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	아이디어, 신기술, 과학기술 및	
<u>창업으로서</u> 기술창업의 업종	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	
은 별표와 같다.	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	
	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	
	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	
<u><신 설></u>	4. "신산업창업"이란 기존 산업	
	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, 파급	
	효과,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	
	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	
	예상되는 산업(이하 "신산업"이	
	라 한다)을 기반으로 창업하는	
	것을 말한다.	
<u>3</u> . "창업자"란 「중소기업창업	<u>5</u>	
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중소		
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	소	
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		

한 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 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 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<신 설>

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 ---- 7년(「중소기업창업 지원 법」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 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)----

- 6. "청년창업기업"이란 창업기 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 인 창업기업을 말한다.
- 7. "중장년창업기업"이란 창업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 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.
- 8. 9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- 제4조의2(창업기업 등의 책무) ①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(이하 "창업기업 등"이라 한다)은 혁 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고,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 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 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 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

회는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 1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 정책실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 장급 이상 공무원, 서울경제진 흥원 대표이사, 서울신용보증재 단 이사장으로 한다.

④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여야	한다.
----	-----

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 한 경험, 지식, 기술 등의 역량 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 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, 창업생 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----- 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---- 경제정책실장-----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 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-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

<신 설>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<삭 제> 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 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제11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제11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 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 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 례」를 따른다.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 다.

>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

>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 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 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--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 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

2. ~ 4. (생 략) <신 설>

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 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 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 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 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 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 | 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1. ----- 위촉 해제를 희망한 -----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

5. (생략)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 <삭 제> 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 며,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 집요구가 있을 때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

<u>한 경우</u> <u>6</u>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삭 제>

<삭 제>

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간사 등) 위원회는 그 사 제15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를 효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 무관으로 한다.

제17조(창업지원) ① 시장은 창업 을 촉진하고, 제2조제3호와 제2 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9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 서기 각 1명을 둔다. 간사는 창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 로 둔다.

제17조(창업지	원) ①	
	창업기업	등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